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100060**
신청인: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에스케이 주식회사**
피신청인 : **GOSA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1.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대표이사 서진우
2.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대표이사 김영태

피신청인: GOSAN(최효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일APT

분쟁 도메인이름은 “skplanet.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아이네임즈(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1. 12. 1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 12. 16.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같은 날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1. 12. 1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1. 12. 1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1. 12. 19.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2. 1. 8.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2. 1. 6.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2. 1. 6. 답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2012. 1. 12.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3인 조정부 후보자 명단 5명을 양당사자에게 제공하였고, 2012. 1. 17. 센터는 양당사자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최성준, 장문철, 서정일 조정위원회에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 1. 17.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 1. 25.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2012. 2. 7. 신청인은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센터는 2012. 2. 8. 이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2012. 2. 14. 피신청인은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센터는 동일자로 이를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3. 사실관계

갑 제2, 3, 4, 5, 6, 18, 23, 51호증, 제21호증의 2, 제37호증의 1 내지 14, 제38호증의 1, 제3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1’ 이라고 한다)은 신청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2’ 라고 한다)의 계열사 중 하나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고 한다)의

분할에 의하여 2011. 10. 1. 설립된 SK텔레콤의 자회사로서, 그 이전에는 SK텔레콤의 업무영역이었던 플랫폼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플랫폼사업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신청인 1은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 오픈마켓 11번가와 같은 커머스, Tstore 등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N스크린, 위치기반 서비스도 신청인 1이 추진하는 플랫폼 사업 중 하나이다}, 신청인 2



는 2011. 8. 25. 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및 서비스업류구분 제9, 35, 36, 38, 39, 41, 42, 45류로 하여 각 상표등록출원 및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한 사실, 2011. 9. 15. 매일경제, 한국경제, 프라임경제, 이투데이의 인터넷뉴스에,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신문의 인터넷 뉴스에, SK텔레콤이 9. 15. 위와 같이 분할되어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를 에스케이플래닛(SKplanet)으로하기로 결정하였고, 에스케이플래닛은 10. 1.부터 출범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SK텔레콤은 ‘플래닛(planet)’은 행성이라는 뜻으로 미지의 꿈이 담긴 커다란 세상이란 의미와 함께 플랫폼(platform)과 네트워킹(networking)의 합성어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생의 에코시스템을 조성해 개인·비즈니스·사회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 신청인 1의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에스케이플래닛’이지만, 위 상호는 신청인 1이 속해 있는 SK그룹(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의 경우처럼(예를 들어 신청인 2는 SK 주식회사라고 표시되듯이) ‘SK플래닛’ 또는 ‘SKplanet’이라고도 표시되는 사실, 신청인 1은 skplanet.co.kr 도메인이름을 2011. 8. 24. 등록하여 위 도메인이름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 8, 9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아이네임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분쟁 도메인이름은

2011. 6. 9. 등록기관을 UK2 GROUP LTD.로 하여 PrivacyProtect.org 명의로 등록되었었는데, PrivacyProtect.org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명칭이 아니라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인터넷주소)이어서, 결국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성명을 대신하는 별칭,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등)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1. 10. 28.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 INAMES CO.,LTD.(주식회사 아이네임즈)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2011. 11. 2.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표시가 피신청인으로 변경된 사실, 피신청인은 2011. 10. 6. CAFE 호스팅센터(cafe24.com)에게 skplanet이라는 아이디로 웹호스팅(64bit 광아우토반 절약형)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늦어도 2011. 12. 11.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피신청인은 2011. 10. 6.부터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웹호스팅 서비스 신청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웹사이트에서 태양, 지구 등 태양계 행성 및 우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위 웹사이트 좌측 상단의 'SKPLANET' 표시 옆에는 'SPACE KOREA PLANET' 이라고 3줄로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2011. 12. 15.경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 화면이 나타나기도 했던 사실, 현재는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 웹사이트에는 역시 태양계 행성 내지 우주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 1의 상호이자 신청인 2가 상표등록출원

을 하여 신청인 1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SKplanet’ 과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철자가 동일하고 따라서 한글발음도 동일하므로 결국 서로 동일하고, 분쟁 도메인이름 중 ‘planet’ 는 보통으로 사용되는 명칭에 불과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는 ‘sk’ 이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들의 저명표장인 ‘SK’ 와도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였고,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고가로 판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영어의 일반명사인 SPACE와 KOREA의 약자 SK와 영어의 일반명사 PLANET를 합하여 ‘한국공간+ 위성’ 이라는 의미를 갖는 skplanet 단어를 만들어, 향후 우주정보 및 한국 과학기술위성 정보를 운영할 웹사이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다.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 1은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인2가 skplanet 상표를 출원하지도 않았다. 신청인 2의 상호 SK(에스케이)는 단지 영어 알파벳 S와 K를 결합한 것이고 SK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planet도 일반적인 보통명사이다. 따라서 SK PLANET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도 사용할 수 있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2011. 10. 6.부터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1. 11. 1. SKPLANET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먼저 어느 누구에게도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하

려 한 적이 없다. 웹사이트 오픈 준비 중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구입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일반명칭으로 된 도메인이름 중 일부를 판매한 적은 있으나 이는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계획이 소멸되어 선의로 판매하였을 뿐이다). 신청인 1의 웹사이트에는 IT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신청인 1과 관련된 내용이나 신청인 1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위성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양자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실제로 신청인들에게 상업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WIPO 결정례에 의하면 상표권이 설정되기 전에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에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 도메인이름 중 2단계 부분인 skplanet은, 그 한글발음이 신

청인 1의 법인등기부상 상호(주식회사 부분 제외)와 동일하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신청인 1의 영문 상호와도 'sk' 부분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데 신청인 1의 한글 상호 및 영문 상호는 신청인 1의 서비스표(영업표지)로도 기능한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신청인 1은 SK planet가 도형과 결합된 표장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하였다).

그러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 1이 권리를 갖고 있는 서비스표와 사실상 동일하다(WIPO Overview 2.0의 1.4 합의된 의견에 의하면, 신청인이 어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성 또는 혼동될 정도의 유사성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나아가 갑 제6, 7호증,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내지 6, 제23 내지 25호증, 제28호증의 1, 제29호증, 제31호증의 4, 제3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2는 1998. 3.부터 SK(에스케이)가 들어간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SK그룹(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사실, SK그룹은 우리나라 5대 기업집단 중 하나로서 1998년경부터 대부분의 계열회사의 상호에 SK(에스케이)를 넣은 사실, SK그룹은 계열회사로 에너지·화학·생명과학분야에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등, 정보통신분야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물류·건설·서비스 분야에 SK네트웍스, SK해운, SK건설 등, 금융분야에 SK증권 등 모두 86개의 회사를 두고 있는 사실, SK그룹의 2011. 4. 기준 자산총액은 약 97조 420억 원, 매출액은 약 112조 3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4조 9,600억 원이고, 2011년 수출금액은 45조 5,000억 원인 사실, 한국광고방송공사가 발표한 2010년 광고주 광고비 현황에 의하면, SK텔레콤이 약 644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광고비 지출 순위 1위이고, 신청인 2가 약 78억 5,00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광고비 지출 순위 66위인 사실,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에서 SK그룹을 약칭으로 'SK'라고도 표시한 사실(삼성그룹은 삼성이라고, LG그룹은 LG라고 약칭하였다), 포털사이트 NAVER에서 기간을 1990. 1. 1.부터 2011. 11. 1.까지로 하여 SK

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뉴스의 수를 검색한 결과 1,165,639건에 이르는 사실(기간을 1990. 1. 1.부터 2012. 1. 3.까지로 하면 1,211,180건에 이른다), 신청인 2,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태평양이었다),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등 SK그룹의 계열회

401998005135

사는 1998. 2. 25. **SK**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99년경 상표등록을 한 것(신청인 2가 상표등록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된 후 일단 신청인 2를 공유지분권자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 후 2008. 9. 29. 신청인 2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 상표권자가 되었다)을 비롯하여, 'SK' 그 자체(약간 굵게 표시하였다) 또는 'SK'가 포함된 많은 수의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는데, 현재는 모든 등록상표에 관하여 신청인 2가 그 상표권자인 사실, 신청인 2는 2010. 3. 18.

SK에 관하여 모든 상품류구분·서비스업류구분마다 각각 상표,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2011. 6. 23.부터 2011. 11. 15. 사이에 상표등록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SK'는 알파벳 2자라는 구성상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5대 기업집단 중 하나의 약칭으로서 십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일반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출처표시로서 기능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수요자들 및 거래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저명성까지 취득하였다. 여기에 SK그룹의 계열회사들의 상호가 거의 모두 SK○○○이고, planet이 행성, 세계를 의미하는,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는 영어단어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은 분쟁 도메인이름 중 2단계 부분인 skplanet을 보고 충분히 sk와 planet을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보통명칭인 planet 부분보다는 앞부분이고 저명한 sk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이므로, skplanet이 SK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여지가 매우 많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상표·서비스표이고 신청인 2의 등록상표인 'SK'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영어의 일반명사인 SPACE와 KOREA의 약자 SK와 영어의 일반명사 PLANET을 합한 skplanet 단어가 우주정보 및 한국 과학기술위성정보를 운영할 웹사이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약자 SK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SK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한 planet도 보통명사이므로, 피신청인도 skplanet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현재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K'가 SK그룹 및 그 계열회사들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인 이상, 단순히 영어단어 2개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가 SK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누구든지 SK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갑 제15, 17, 45, 49호증, 갑 제4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판매 및 정보교환 사이트인 www.dodong.com의 활동회원으로서, 2009. 3. 10. 위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도메인이름을 미화 15,000달러에 판매하였다고 하였고, 2011. 11. 9. 위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최근에 도메인이름들을 1,000만원과 미화 20,000달러에 판매한 실적이 있다고 한 사실, 2011. 10. 1. 전북 남원시 도동동 부영아파트를 주소로 하는 SpaceKoreaPlanet을 등록인으로 하여 spacekoreaplanet.com 도메인

이름이 등록된 사실,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콘텐츠는 spacekoreaplanet.com으로 개설된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와 거의 동일한데, 2012. 2. 6.자 호스팅 현황을 보면, 분쟁 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CAFE 호스팅센터(cafe24.com)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spacekoreaplanet.com이 위 호스팅센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분쟁 도메인이름은 CYPACK Name Server(분쟁 도메인이름의 현재의 등록기관인 아이네임즈의 리셀러업체)에서 spacekoreaplanet.com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2011. 11. 1. **SKPLANET**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우주나 위성과는 전혀 무관한 밀가루, 전분, 곡물수프, 만두, 스파게티, 우동, 초밥, 피자, 과자, 빵, 아이스크림, 간장, 인삼차, 커피 등(상품류구분 제30류)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커피전문점으로 유명한 카페베네가 사용하는 서비스표와 유사한 ‘caffebene 카페베네’에 관하여 2010. 7. 22.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다른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서비스표

와 거의 동일한 **Mahindra**에 관하여 2010. 8. 13.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13류로, **GROUPM**에 관하여 2011. 8. 18. 지정상품을 상품류구

분 제35류로, **THACO**에 관하여 2011. 9. 5.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2류로, **LUAMOI**에 관하여 2011. 12. 6.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33류로, **indomobil**에 관하여 2011. 12. 30.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2류로 하여 각 상표등록출원을, **BDNA**에 관하여 2011. 8. 24.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구분 제41류로, **VTC** 에 관하여 2011. 10. 20.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제41류로 각 서비스표등록출원을, **NGON** 에 관하여 2011. 9. 20.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구분 제30류 및 서비스업류구분 제43류로 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으며, 인도 등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로 널리 알려진


RUIA

RUIA GROUP의 상표와 유사한 루이아 에 관하여 2010. 8. 27.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2류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11. 11. 1. 상표등록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우주정보 및 한국 과학기술위성정보를 운영할 제대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갑 제11, 12, 51, 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말과 2011. 3.초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의 인터넷뉴스에, SK텔레콤이 2008. 2. 온라인 유통업 진출을 위해 신설한 ‘커머스플래닛사업본부’가 운영 중인 오픈마켓 11번가가 적자 영업을 이어오다가 2010년 4분기에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면서, 오픈마켓 11번가와 같은 모바일 커머스 부분이 SK텔레콤으로부터 분사되어 독립될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 2011. 5. 31. 한국경제, 뉴스토마토, 이데일리, 연합인포맥스뉴스, 머니투데이 등의 인터넷뉴스에, SK텔레콤이 통신 영역과 플랫폼 영역으로 사업을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플랫폼 사업(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1의 플랫폼사업 중 오픈마켓 11번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의 물적 분할을 통한 100%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 DAUM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웹사이트호스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등으로 하여 2005. 10. 19. 서비스표등록을 받았고,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 Planet

엘지는 2011. 4. 21. 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컴퓨터/무선기기/핸드폰/타블릿PC/Television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소매업, 전자기기용 어플리케이션 도매업/소매업, 데이터통신업, 전자상거래용웹사이트관리업 등으로 하여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특히 SK텔레콤에서 플랫폼사업을 수행하던 부서가 커머스플래닛사업본부이었다는 점,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사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자신들의 저명 표장에 플래닛을 결합한 서비스표를 등록하거나 출원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2011. 6. 9. 무렵 경제 및 IT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SK텔레콤으로부터 오픈마켓 11번가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될 것이고, 그와 같이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가 SK플래닛(SKplanet)이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이후에 비로소 신청인 1의 상호가 에스케이플래닛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의 판단에,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었다가 신청인 1의 상호가 2011. 9. 15.경 에스케이플래닛으로 결정된 다음에서야 웹사이트 개설 준비가 시작되고,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비공개로 있다가 피신청인으로 변경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인(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신청인인지 아니면 피신청인과는 별개의 제3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은 에스케이플래닛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먼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신청인 1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

을 방해하거나 또는 높은 대가를 받고 신청인들에게 분쟁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여지가 매우 많다. 즉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음으로 분쟁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가 피신청인으로 변경된 2011. 11. 2. 무렵의 상황을 살펴보면,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11 내지 13,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0. 11.경부터 신청인 1이 태블릿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야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였으며, 신청인 1이 서비스하는 Tmap 가입자가 1,000만명을, 모바일 지갑 가입자가 300만명을 각 돌파하였다는 내용 등 신청인 1의 사업활동 내역 및 향후 전망이 활발히 보도되기 시작한 사실, 포털사이트 NAVER에서 기간을 2011. 11. 1.까지로 하여 sk plane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뉴스의 수를 검색한 결과 259건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3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신청인 1이 Tstore, Tmap, hoppin 서비스{영화, TV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 원하는 콘텐츠를 N-스크린(PC, 스마트폰, Tablet PC, TV 등)을 통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통합형 미디어 서비스}, 오픈마켓 11번가의 식자재 분야 진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내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 제16, 50,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1. 11. 말 내지 12. 초경에 신청인들측에게 분쟁 도메인 이름을 1억 원에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고(신청인들측에서 먼저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라고 제의를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나 분명하지는 않고, 누가 먼저 제의를 하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2011. 12. 6.에는 신청인들측에게 자신이 분쟁 도메인 이름을 고가에 구매하여 분쟁 도메인 이름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만일 피신청인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 및 투자비용 때문에 2012년이 되면 판매가격이 1억 5,000만 원, 2013년에는 2억 원 등으로 증가한

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그 후 이 사건 신청이 있는 다음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 관련 대리인인 허정희는 2011. 12. 20. 경 신청인들측에게 분쟁 도메인이름 판매가격으로 7,0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12. 27.경 신청인들측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판매가격은 최소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측의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위 허정희는 2011. 12. 말 내지 2012. 1. 초경 신청인들측에게 ‘규정’ 제4조 a항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쉽지 않다는 취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이전결정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매수가격을 높여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 신청인들은 최종적으로 1,500 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000만 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2. 1. 13.경 판매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의 3항, 4의 B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의 최초 등록인 또는 피신청인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후이즈정보에 최초 등록인의 개인정보가 비공개로 되어 있다가 2011. 11. 2.경 등록인이 피신청인으로 바뀌어 표시되었는데, ① 등록인이 원래부터 피신청인이었고 다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였다가 2011. 10. 말경 등록기관을 변경하면서 비로소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아니면 ② 원래 등록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제3자이었고 피신청인이 그 제3자로부터 분쟁 도메인이름을 매수하면서 등록기관을 변경하고 2011. 11. 2. 등록인을 피신청인으로 변경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인 허정희는 신청인들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원래의 등록인으로부터 비싼 가격(5,000만 원이라고도 하였다)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이 진술에 의하면 위 ②가 사실이다),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등록기관 및 등록인 표시 변경 이전인 2011. 10. 6.부터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

답변서에서 피신청인이 2011. 6. 6.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표현을 하는(이 주장에 의하면 위 ①이 사실이다) 등, 피신청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한다}은 신청인 1이 에스케이플래닛이라는 상호로 설립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먼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 1이 실제로 설립되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자 비로소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그 웹사이트에서는 태양, 지구 등 태양계 행성 및 우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 뿐인 점, 피신청인은 향후 우주정보 및 한국 과학기술위성 정보를 운영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나,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과 동일한 표장을 상표등록출원 하면서 그 지정상품을 위 준비 중이라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상품으로 정하였고, 위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도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판매 및 정보교환 사이트인 www.dodong.com의 활동회원으로서 최근에 여러 번 도메인이름을 높은 가격에 판매한 적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측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3,000만 원 내지 1억 원에 판매하려고 한 점, 피신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제3자의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10개에 관하여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등록인 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자신의 상호의 영문 표기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높은 대가를 받고 신청인들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즉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1억 원이나 되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한 이상,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를 신청인 1의 영업과 무관한 분야에 관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일 위 ②가 사실이라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상호가 에스케이플래닛으로 정해지고 신청인 1이 그 상호로 활발한 영업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매수한 것이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더욱 분명하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분쟁 도메인 이름 skplanet.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신청인들은 신청인들 공동명의로 이전할 것을 구하나, 분쟁 도메인 이름이 신청인 1의 영문 상호와 동일하고, 아직까지 신청인 2가 분쟁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신청인 2가



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 및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아직 상표등록이나 서비스표등록이 되지는 않았다) 굳이 신청인들 공동명의로 이전하기 보다는 신청인 1 명의로 이전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 2의 이전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최성준
주조정인

서정일
부조정인

장문철
부조정인

결정일: 2012년 3월 7일